

#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2.15 조례 제1816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1863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964호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015.04.15 조례 제1973호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108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327호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7.04 조례 제24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3.30., 2021.6.30.>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

삭제 <2022. 7. 4.>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9>

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정 2017.9.29>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민간기업 및 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군수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 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4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또는 대행 사업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의 관련법령 준수)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⑮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⑯ ~ ⑰ (생략)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

다.

⑯ 부터 ⑳ 까지 생략

부 칙(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 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37항까지 생략

제38항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3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